

발표논문

## 中国仲裁制度

王 紅 松 \*

〈목 차〉

- I. 중재법이 실행되기전의 중국중재제도의  
형성과 발전
- II. 중재법의 유관 규정과 실행상황
- III. 북경중재위원회에 대한 소개

\* 北京仲裁委員會 秘書長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이번에 이 영예로운 국제거래신용대상을 수상한 삼성물산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 이번 시상식에 초청해주신, 한국중재학회의 양병희 회장님, 대한상사중재원의 김종희 원장님, 국회의원 유재건 의원님, 삼성물산의 정우택 사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귀빈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제거래신용대상 시상식에 참석할수 있게 된것을 너무나 고맙고 영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영예뿐만이 아니라 북경중재위원회의 영예인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중재학회와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 북경중재위원회에 대한 진지한 우정과 서로 합작하려는 성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북경중재위원회의 전체 직원은 그 성의와 우정을 저버리지 않을것이며 한국중재학회와의 합작을 강화하여, 중국과 한국의 중재업무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진력할것입니다.

아래에 제가 중국 대륙지역의 중재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I. 중재법이 실행되기전의 중국중재제도의 형성과 발전

중국국내중재제도의 형성과 발전은 20세기 80년대초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국무원(國務院)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중재조례>(中華人民共和國 經濟合同仲裁條例)를 반포한 뒤, 국가공상행정관리국(國家工商行政管理局)에서는 <경제계약중재위원회판안규칙>(經濟合同仲裁委員會辦案規則)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의 공상행정기관은 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경제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중재기구중재규칙(시행)>(中華人民共和國科學技術仲裁規則)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의 과학기술관리부문에서도 자기의 중재위원회를 설립하

였습니다. 이외에 국가 및 지방의 저작권(著作權)관리부문에서도 저작권 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중국의 중재제도는 계획경제 (計劃經濟) 시기에 형성되었고 발전하였는데, 이는 중재의 행정적 색채를 짙게 하였습니다. 중재기구는 행정부문 아래에 설치되었고 중재인은 주요하게 행정부문의 관련자였으며 중재절차에 대한 강행규정이 많았는데 예하면 당사자는 중재지, 중재기구, 그리고 중재인을 선정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재기구는 부동한 행정부문에 예속되어 있었고 부동한 법률, 중재규칙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각자의 중재제도와 중재절차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욱기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당시는 섭외중재 라 함. 즉 일방 당사자가 외국의 공민이거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사건 분쟁대상이 외국에 있거나, 국경을 넘는 행위인 사건 법률적 사실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중재를 말함. )는 절차면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제중재사건은 주로 중국국제무역 중재위원회 (CIETAC)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 (CMAC)에서 수리하고 있었으며 적용되는 중재절차는 각국의 중재관례와 별 다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존재는, 중국중재제도의 현대화, 국제화의 발전에 불리하였으며 일정한 정도에서 중국시장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변하고자, 1994년 8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중재법>을 통과하였습니다.

## II. 중재법의 유관 규정과 실행상황

중재법의 반포와 실행은 종전의 중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였으며 중국중재제도 발전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였습니다. 그 변혁은 아래와

같은 면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① 중재기구를 행정부문에서 분리함으로써 그 민간성을 둘출히 하였는데 이는 중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중재법에서는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에서 독립되며 행정부문과는 그 어떤 예속관계도 있지 않고 중재위원회 사이에도 예속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중재위원회와 중재기구는 지방의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상회에서 통일적으로 설립한다"고 규정하였고 "중재는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하며 행정기관, 사업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② 중재인의 전업성(專業性)을 중요시하였으며 종전의 행정부문 관련자가 중재인을 겸임(兼任)하고 있던 상황을 개변하였습니다.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은 중재위원회가 공정하고 단정한 사람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중재인은 "1) 중재업무 만8년 종사하였을 것. 2) 변호사로 만8년 종사하였을 것. 3) 판사로 만8년 임명되었을 것. 4) 법률연구직·법학교수 및 고급 직무에 종사하였을 것. 5) 법률지식을 구비하였거나 경제무역 등 전문직에 종사하고 고급직무 또는 동등 수준의 전문성을 구비하였을 것." 등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각 중재기구에서는 또한 그 지역의 인재분포상황과 업무의 수요에 부응하여 구체적인 중재인 임용규준을 제정할수 있는데 예하면 북경중재위원회는 학력, 전업자격(專業資歷), 그리고 직무급별(職務級別) 등 요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재인의 전업적 우세는 중재판정의 준확성과 사건처리효율의 제고에 유익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당사자자치(當事者自治)원칙을 충분히 체현하였습니다. 예하면 "중재기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중재는 지역관할(地域管轄)과 급별관할(級別管轄)을 시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방식, 중재인의 선임, 중재절차의 선정(일반절차, 신속절차), 중재심리방식(구술심리, 서면심리), 판정서의 내용(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등) 등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意思)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보호주의와 행정의 간섭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중재제도가 실행된지 얼마 되고 중재업무에 익숙한 중재인이 적은 현황을 고려하여 중재법은 기구중재(機構仲裁)만 규정하였을 뿐 임시중재(臨時仲裁)에 대하여서는 규정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④ 중재의 신속하고 편리하며 효율이 높은 특성을 잘 체현하였습니다. 중재법에서는 "중재는 단심제를 실시하며 당사자가 중재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합의하였을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수리하지 않으며 중재판정은 작성된 날부터 시작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중재가 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하였습니다. 중국의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은 3심(兩審終審)를 실시하는데 당사자가 1심판결(一审判決)에 불복하면 상고할 수 있으며 2심판결(二審判決)은 종결적입니다. 소송은 일반절차를 적용하는 국제사건은 접수에서 판결까지 대략 9개월이라는 긴 시일이 필요하며 국제사건은 이런 심리기한의 제한이 없이 이보다 더욱 긴 시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재는 단심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데 북경중재위원회를 보면 일반절차를 적용하는 국제사건은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서부터 6개월내에 판정하며 게다가 중재인이 외국어를 할 수 있고 전업수준이 높기에 국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입니다.

⑤ 중재는 민상사분쟁(民商事紛爭)에만 적용됩니다. 중재법에서는 "평등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사이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의 분쟁은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행정분쟁,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⑥ 국제중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독점을 타파하였습니다. 중재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롭게 설립된 중재기구는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와 마찬가지로 국내중재사건 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사건도 수리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중재기구 사이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중재기구의 사건처리 질과 효율을 높이는데 유익합니다.

중재법이 실행된 뒤의 중국중재업무는 신속히 발전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7개 중재기구(북경, 상해, 천진, 광주, 심수, 서안, 흑호호터)를 설립하였고, 2000년에 이르러 재조직된 전국의 중재기구는 160개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에는 165개로, 2002년에는 168개로, 2003년에는 이르러서는 172개로 발전하였습니다. 전국의 4개 직할시, 27개 성소재지 도시, 141개 비교적 큰 도시에 모두 중재기구를 설립하였는데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를 포함하여 전국의 중재기구는 모두 174개에 달합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전국의 중재기구에서 수리한 사건은 7401건에 달하며, 그 분쟁금액은 167억원(인민폐, 이하 같음)에 달하였고, 2000년에는 9577건이였고 그 분쟁금액은 221억원, 2001년에는 12127건이며 그 분쟁금액은 278억원, 2002년에는 17959건이고 그 분쟁금액은 342억원에 달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수리한 중재사건는 26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중재사건은 지속적인 증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 대리인들의 새로운 중재제도, 그리고 중재인, 중재기구의 업무에 대한 믿음과 신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상의 관례에 비추어 볼때 중국대륙의 중재법은 아직도 많은 부족한점과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면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① 중국대륙의 중재제도는 아직까지 임시중재(臨時仲裁)를 승인하지 않

고 있으며 당사자사이의 중재합의가 임시중재를 선정하였을 경우, 그 중재합의를 무효(無效)로 인정합니다.

② 중재합의의 내용에 대한 요구가 엄격합니다.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는 중재사항과 선정한 중재기구 (규정에 의하면 재조직된 중재기구의 명칭은 반드시 지명(地名)과 중재위원회 라는 5글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예하면 북경중재위원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만일 이 두 사항이 불명확하면 중재합의는 무효(無效)로 인정됩니다. 현실중에는 중재기구의 명칭을 틀리게 기재하여 중재합의가 무효로 인정받는 사건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때문에 한국기업이 중국대륙에서 중재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에는, 중재합의에서 중재기구의 명칭을 제대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중국대륙의 많은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격식(格式)조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약정하는데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재조항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상의하여 확정한 중재기구의 명칭을 중재조항에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만일 중재기구의 명칭을 틀리게 기재하게 되면 사후에 중재합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조성하게 되며 이는 분쟁의 해결에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최고인민법원의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司法解釋)에 따르며는 "중재합의에서 중재기구의 명칭에 대한 표달이 불준확하면, 이때는 중재합의가 유효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장래 법원의 중재에 대한 사법감독(司法監督)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중재제도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③ 국내중재판정과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아직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절차에 대하여서만 심사하고 그 실체(實體)에 대하여서는 심사하지 아니 하지만 국내중재판정은 절차와 실체를 다 같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정의 집행에 관하여서도 국내판정의 집행은 기충법원(基層法院)에서도 부집행(不執行)을 판정할수 있지만 국제판정에 대하여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司法解釋)에 의하면 "직할시, 성소재지와 계획단열시 (計劃單列市), 특별행정구의 중급인민법원,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중급 (中級) 인민법원에서 판정하는데, 만일 부집행(不執行)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을 경우는 고급(高級)인민법원에 송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만일 고급 (高級)인민법원에서도 부집행(不執行) 또는 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최고인민법원에 그 심사의견을 고지하여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답변(答覆)이 있은 뒤에야 부집행 또는 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는 판정을 내릴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④ 설립한 중재기구가 너무 많으며 또한 중재인사이 그리고 중재기구 사이의 중재수준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기업은 중국대륙에서 중재기구를 선정할 때 사전에 그 중재기구가 수리한 사건, 중재인, 관리와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해 잘 조사하여야 합니다. 북경중재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의 일부 중재기구에서는 자기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며 한국기업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타 중재기구의 상황에 대하여 이해할수 있습니다. 중국대륙 중재기구가 처리한 사건 전수에 대한 국무원 법제판공실 (法制辦公室)의 통계에 따르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재기구는 북경중재위원회,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 그리고 광주, 심수, 무한의 중재위원회입니다.

### III. 북경중재위원회에 대한 소개

북경중재위원회는 1995년9월28일에 설립되었는데 설립된 해에 수리한 중재사건은 7건이였고 분쟁금액은 4000여만원 (인민폐)이였지만 2003년에는 수리한 사건은 1029건에 달하였고 분쟁금액은 48억원(인민폐)에 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매매계약분쟁은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공정계약분쟁은 26.5%, 임대계약분쟁은 6.41%, 차대(借貸)계약분쟁이 5.5%, 합자

계약분쟁이 3.5%, 그리고 기타 계약분쟁이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사건은 101건으로써 전 사건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근년내 발전은 신속합니다. 2001년부터 2003년말까지, 이 3년내에 수리한 국제중재사건은 72건으로써 전체국제중재사건의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가 심리종결한 사건은 3615건으로써 그 종결률은 92%에 달하였으며 매 사건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 날부터 시작하여 심리종결까지 평균 70일정도 걸리였으며 입안(立案)에서 종결까지 90일정도 걸리었습니다. 심리종결된 사건중에서 법원에 의하여 전부 철회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철회된 사건은 11건이였고 재중재판정(重新仲裁)을 받은 사건은 6건, 부집행(不執行)한 사건은 14건이였는데 이는 심리종결사건의 1%에 미달하였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는 설립초기 시정부 재정의 일정한 지원을 받았었지만 1999년부터 시작하여서는 재정에서 자립할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완전히 행정부문에서 독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는 자기의 사무실과 당사자, 대리인을 위한 56개 주차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는 수리한 중재사건 건수, 사건처리의 질과 효율, 그리고 중재인의 전업적소양, 중재업무의 관리와 서비스 수준 등 면에서 업계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는 수리한 중재사건의 수량과 질, 효율면에서, 그리고 중재인의 소양, 관리와 서비스 수준 등 면에서 전국 중재업계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대륙의 기타 중재기구와 비하여 보며는 북경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월성과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① 북경시 정부는 비교적 개명(開明)합니다. 시정부의 고위 인사는 "정부가 중재기구에 대한 가장 큰 지지는 불간섭이다"고 명확히 밝히였으며 북경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시정부는 북경중재위원회의 중재업무, 그리고 행정사무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경중재위원회의 발전에 비교적 자유로운 외부공간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의 대다수 성원은 법률분야의 전문가, 학자이며 이는 중재위원회의 결책(決策)수준과 질을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하면 중재위원회 위원장 강평교수님은 전국의 저명한 민상법학 교수이며 부 위원장 및 기타 위원은 청화대학,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의 부 학교장 또는 법학원의 원장입니다.

② 북경중재위원회는 북경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타 지역의 중재기구와는 비할수 없는 인재(人才)의 우세를 갖고 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는 현재 294명의 중재인을 임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전국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와 학자들입니다. 그중에서 홍콩과 대만의 중재인은 9명, 외국인 중재인은 10명 (영국중재인 4명, 독일중재인 2명, 미국중재인 2명, 이태리아중재인 1명, 프랑스 중재인 1명임)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중재인은 61명으로써 전체 중재인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사학위를 취득한 중재인은 105명으로써 전체 중재인의 35.7%, 학사학위를 취득한 중재인은 107명으로써 전체 중재인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업적분포(專業分布)를 살펴보며는 법학교수와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중재인은 27%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무역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중재인은 31%, 변호사인 중재인은 19.6%, 판사로 취임한 적이 있는 중재인은 9%, 기타 법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중재인은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인 명부중의 상당한 일부분의 중재인은 동시에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의 중재인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국제중재사건당사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북경중재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중재경험이 풍부한 외국인 (대한민국 중재인을 포함함) 중재인을 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③ 북경중재위원회의 체제는 영활성(靈活性)이 있으며 능력이 있고 효율이 높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의 일상사무를 처리하는 중재위원회 사무국(辦公室)은 공개 임용제, 직무책임제(崗位責任制), 업적과 효율을 결부시키는 관리제도(績效管理考核制度)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재서기는 대학교 법률전공의 석사생, 박사생인데 작년에는 4명의 중재서기를 채용하는데 1000여명이나 되는 석사생, 박사생들이 지원하였었습니다. 사무국(辦公室)의 현재 직원의 평균년령은 28.5세이고 대졸 및 그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가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박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④ 국제상사중재의 추세에 따르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재의 공정성과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의 책임자와 직원은 중재인으로 될수 없으며 중재인 임용에서는 일관하게 중재인의 도덕적 소양과 전업적 소양을 중요시하여 왔으며 비교적 엄격한 중재인 임용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북경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인 수칙>, <중재인 임용관리 방법>, <중재효율을 높일데 관한 약간의 규정>등 일련의 관리 규범을 제정하였으며 현실에서 엄격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는 3년마다 중재인 교체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중재인에 대하여 재임용합니다. 북경중재위원회는 설립되여서부터 지금까지 2번의 중재인 교체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0여명의 중재인이 재임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또 중재규칙, 중재인 수칙 등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한 뒤의 중재규칙은 당사자의 자치(自治)를 체현하는 면에서, 중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면에서 일련의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1) 의장중재인 선임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직접 3명의 의장중재인 후보인을 선임할수 있으며 또한 중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의장중재인 후보인 명단중에서 3명을 선임할수 있는데, 위원장은 양 당사자가 선임한 후보인중에서 같은 중재인을 의장중재인으로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의장중재인을 선임할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였습니다.

(2) 중재인 피로(披露)제도와 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중재인은 취임 하기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사이에 존재하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야기시킬수 있는 사항"을 피로(披露)하여야 하며 이러한 피로(披露)는 중재의 제반과정에서 지속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중재인이 판정서에서 명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의 판정서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의견은 판정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중재판정의 투명성(透明度)을 높이었을 뿐만 아니라 서명하지 않은 중재인의 의견을 알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만족하였습니다.

(4) 사건처리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국제상사중재절차의 판정기한은 원래의 8개월로부터 6개월로 단축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중재의 신속한 진행을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5) 중재인은 본 회가 접수한 사건의 대리인으로 될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6) 중재인 보수(報酬)배당방법과 규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뒤의 중재규칙과 기타 중재규범은 금년 3월 1일부터 실행되게 됩니다.

⑤ 북경중재위원회는 사무의 자동화(自動化)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는 컴퓨터회사와 협작하여 중재사건관리 소프트워어를 개발하였으며 입안(立案)으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반 중재절차의 진행을 이 소프트워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경중재위원회는 자기의 인터넷 전용선을 갖고 있고 매개 중재청(仲裁廳)마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디지털 녹화, 녹음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서 중재판정부의 심리, 중재인의 합의(合議)는 동시에 컴퓨터에 입력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조정이 성립된 뒤에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로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북경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전업자력 (專業資歷), 사건처리상황 등 정보를 이해할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이후에는 또 당사자가 패스워드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중재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수 있고 중재인은 인테넷으로 사건의 진행정황을 이해할수 있으며 컴퓨터가 중재인에게 사건처리기한을 제시해주는 등 온라인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대한으로 사건처리시간을 단축할수 있으며 중재의 효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⑥ 북경중재위원회는 또한 양호한 공공(公共)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는 북경시 법원과 최고인민법원, 그리고 중국국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 각 지방의 중재기구와 유관 분야와의 양호한 업무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경중재위원회는, 국제상에서 일정한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중재기구로 건설하려는 목표를 확립하였으며 각국의 중재기구와의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근린이며 문화적 배경, 그리고 독립, 자강, 진취등 정신적인 면에서도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 북경중재위원회에 오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우리는 중국, 한국 중재업계와 상업계의 교류와 협작이 우리 두 나라의 중재업무의 공동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강연을 여기서 끝마치면서 또 한번 한국중재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 유재건 의원님, 삼성물산의 정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中国仲裁制度

北京仲裁委员会王红松秘书长在国际交易信用颁奖典礼的发言

热烈祝贺三星物产公社荣获国际交易信用大奖。衷心感谢梁会长、感谢韩国仲裁学会、韩国商事仲裁院、三星物产公社、议员和今天在座的各位朋友!今天能够出席这样隆重的颁奖典礼我感到无上荣耀，激动之情难以言表。这不仅是我个人的荣耀，也是我们北京仲裁委员会全体同仁的荣耀。这荣耀反映了韩国仲裁学会、在座各位朋友对北仲的真挚情谊和希望同北仲合作的美好愿望。我相信，我们北仲的全体同仁，绝不会辜负这份深情厚谊，会为加强北仲与韩国仲裁学会合作，推动中国、韩国仲裁事业共同发展而努力工作。下面我向各位朋友简单介绍中国仲裁制度情况。

### 一、仲裁法实施前，中国仲裁制度发展情况

中国国内仲裁制度的形成和发展自20世纪八十年代开始，1983年国务院颁布了《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仲裁条例》，而后国家工商行政管理局制定了《经济合同仲裁委员会办案规则》，各地工商管理机关相继成立了经济合同仲裁委员会，受理经济合同纠纷。1991年，国家科学技术委员会制定了《中华人民共和国技术合同仲裁机构仲裁规则（试行）》，各地科学技术管理部门又成立了技术合同仲裁委员会。除此之外，还有国家及地方版权管理部门成立版权仲裁委员会。国内仲裁的形成和发展于计划经济时代，其性质是行政仲裁色彩很浓，仲裁机构设在各行政机关里，仲裁员由主要行政人员担任，仲裁程序强制性内容较多，如当事人没有对仲裁地点、仲裁机构和仲裁员的选择权等等。而且，由于仲裁机构隶属于不同的行政部门，适用的法律、法规、仲裁规则、仲裁程序不同，国内仲裁与涉外仲裁（当事人有一方是外国的公民、法人或其他组织；案件标的位于国外或涉及跨国境的活动；法律事实发生在国外）在基本制度和程序上差距悬殊。涉外案件全部由中国国际经济贸易委员会（贸仲）、中国海事仲裁委员会（海仲）审理，适用的程序与各国仲裁的惯例基本相同。这些问题的存在，不利于中国仲裁制度朝着现代化、国际化方向发展，在一定程度上，影响了中国市场经济的发展。为了改变这种情况，1994年8月31日全国人大常务委员会通过了仲裁法。

### 二、仲裁法的规定及实施情况

仲裁法的颁布实施是对旧仲裁制度的根本变革，是中国仲裁制度发展史上的一个里程碑。这种变革体现在：

- 1、将仲裁机构从行政机关中分离，突出机构的民间性质，保障仲裁机构的独立性、公正性。仲裁法规定：仲裁委员会独立于行政机关，与行政机关没有隶属关系。仲裁委员会之间也没有隶属关系；仲

裁委员会由地方政府组织有关部门与商会等部门组一组建，“不按行政区划层层设立”；仲裁独立进行，仲裁裁决按仲裁员意见作出，不受行政机关、社会团体和个人的干预，等等。这些规定有效保障了仲裁的独立性。

2、强调仲裁员的专业性，改变了过去仲裁员主要由行政机关工作人员兼任的情况。仲裁法规定仲裁员由仲裁委员会从“公道正派的人员中”聘任。仲裁员的法定条件是：曾任审判员、从事律师或从事仲裁工作满八年，从事法律研究、教学工作并具有高级职称；具有法律知识、从事经济贸易工作并具有高级职称或同等专业水平。除此之外，各仲裁机构还可根据所在地区的人才状况和工作需要制定具体标准。如北仲还对仲裁员提出了学历、专业资历、职称等均有具体的规定。仲裁员的专业优势有助于其仲裁判断的准确性和办案效率。

3、充分体现当事人意思自治原则。仲裁法规定仲裁机构由当事人协议约定，不再实行地域管辖和级别管辖原则。在仲裁程序中，当事人可选择组庭方式、仲裁员、仲裁程序（普通程序/简易程序）、仲裁方式（开庭审理/不开庭审理）、裁决书内容的表述（附事实理由/不附事实理由）等。这不仅充分体现了当事人意愿，而且，也较好地限制了地方保护主义和行政干预。考虑到新仲裁制度刚刚实施及人才状况，仲裁法只规定了机构仲裁，没有规定临时仲裁。

4、体现了仲裁的灵活、简便和效率原则。仲裁法规定，仲裁实行或裁或审，一裁终局的制度。当事人发生争议选择仲裁解决纠纷的，法院不再受理该纠纷。仲裁裁决自作出之日起发生法律效力，一方当事人不履行裁决，另一方当事人可申请法院强制执行。这使仲裁比诉讼节省时间和金钱。因为，按照中国诉讼法，诉讼实行两审终审制度，当事人对一审法院判决不服，可以上诉，二审法院的判决为终局判决。一个国内普通程序案件按诉讼法规定的期限为9个半月。涉外案件不受该审理期限的约束，通常要比审理国内案件的期限长很多。仲裁是一裁终局，如按北仲的仲裁规则，涉外案件普通程序从组庭到结案期限为6个月，而且，由于仲裁员懂外语、懂专业，审理涉外案件更有效率。

5、仲裁范围适用于民商事争议。仲裁法规定：平等主体公民、法人和其他组织之间发生的合同纠纷和其他财产权益纠纷，可以仲裁。行政争议、婚姻、收养、监护、抚养、继承案件不适用仲裁。

6、打破垄断，无论是新组建的仲裁机构，还是中国经济贸易仲裁委员会(以下简称贸仲)、中国海事仲裁委员会，均可以既受理国内案件，又受理涉外案件。这就有效地促进了竞争，有利于仲裁机构提高案件质量和效率。

1995年9月1日仲裁法实施后，中国仲裁事业发展迅速。1995

年全国共有7个城市（北京、上海、天津、广州、深圳、西安、呼和浩特）重新设立了仲裁机构。2000年新组建的仲裁机构发展到160家，2001年发展到165家；2002年发展到168家；2003年发展到172家。全国4个直辖市、27个省（自治区）辖市、141个较大的设区的市均成立了仲裁机构。加上贸仲和海仲，目前全国共有174家仲裁机构。据不完全统计，全国仲裁机构1999年受理案件7401件，标的167亿元（人民币，下同）；2000年受理9577件，标的221亿元；2001年受理12127件，标的278亿元；2002年受理17959件，标的342亿元；2003年经初步统计，案件超过26000件，标的超过350亿元。仲裁案件的持续增长，反映了当事人、代理人对新的仲裁制度，对广大仲裁员和仲裁机构工作的普遍认同。

按照国际商事仲裁的通行做法，仲裁法本身也存在一些缺陷，这些问题主要是：

1. 只承认机构仲裁不承认临时仲裁，当事人只能从仲裁机构的仲裁员名册中选择仲裁员，这在一定程度上，限制了当事人选择仲裁员的权利。
2. 对仲裁协议内容规定得过死，要求过高。仲裁法规定，仲裁协议应写明：选定的仲裁委员会（按照国务院文件规定，新成立的仲裁机构名称统一为地名加上“仲裁委员会”字样。如“北京仲裁委员会”）如果仲裁机构不明确，则仲裁协议无效。实践中，仲裁协议因仲裁机构的名称不准确而被认定无效的情况并不鲜见。韩国企业在大陆投资如果选择仲裁解决纠纷，对此应有所了解，尽量将仲裁条款写好。现在大陆许多企业都有一些格式合同条款，有的格式合同中解决争议条款中列有仲裁条款。仲裁条款中包括对仲裁机构的选择。当事人应尽量将仲裁机构名称写准确，否则，可能会引起仲裁协议效力异议，给争议的解决带来麻烦。当然，这种情况已经引起最高法院的重视。最高法院在以往的司法解释中，对那些因仲裁机构名称表述不准而引起争议的仲裁协议，尽量作协议有效的解释。总的倾向是，法院对仲裁的司法监督尽量顺应国际商事仲裁发展潮流，支持和鼓励仲裁制度的发展。
3. 法院对国内仲裁裁决与对涉外仲裁裁决的司法审查差别过大。法院对涉外或外国仲裁裁决只审查程序，不审查实体；对国内仲裁裁决审查程序和实体两个方面。另外，在裁决的执行上，国内仲裁裁决基层法院就可作出不予执行的裁定；涉外仲裁裁决的执行，由直辖市、省辖市、计划单列市、特区市的中级法院、最高法院指定的中级法院负责，这些法院认为裁决有不予执行情形的，需报高级法院审查，如果高级法院同意不予执行或者拒绝承认和执行，应报最高人民法院，待最高人民法院答复后，方可裁定不予执行或者拒绝承认和执

行”。

4. 仲裁机构成立得过多，而且，仲裁员之间、仲裁机构与仲裁机构之间的仲裁水平参差不齐。韩国企业在中国选择仲裁，应尽可能了解其选择的仲裁机构的案件受理情况、仲裁员素质、办案经验、管理和服务水平等。北仲、贸仲和国内一些仲裁机构设有自己的网站，韩国企业可通过该网站了解情况。根据近些年国务院法制办公室对全国仲裁机构案件数的统计，中国案件数、标的连续多年排名前4名的仲裁机构有北仲、贸仲以及广州、深圳的仲裁委员会。

### 三、北京仲裁委员会情况介绍

北京仲裁委员会于1995年9月28日成立。成立当年，受理案件7件，标的4000多万人民币；2003年全年受理案件1029件，标的48亿多。北仲从成立到2003年年底，共受理案件3992件，其中买卖合同纠纷43.7%；建设工程合同纠纷26.5%；租赁合同纠纷占6.41%；借贷合同纠纷占5.5%；合资合作合同纠纷占3.5%；其他各类合同占14.4%；涉外案件101件，占案件总数的2.5%，虽然数量不多，但近几年有迅速发展的趋势，2001年至2003年三年期间，受理涉外案件72件，占全部涉外案件总数的71.3%。

北仲共审结案件3615件，结案率为92%，平均每件案件从组庭到结案审理期限不足70天。从立案到结案不足90天。在审结的案件中，法院裁定撤销或部分撤销的案件11件，裁定重新仲裁的6件，法院裁定不予执行的14件。这些案件不足结案总数的1%。

北仲成立时，市财政对北仲给予一定的财政支持，从1999年开始北仲实现了财政自收自支，经济上完全独立。现在，北仲已经在位于北京国际商务中心的招商局大厦购置了自己的办公用房和56个供当事人、代理人办案停车之用的停车位。

北仲的仲裁数量、质量和效率，仲裁员的素质，管理和服务水平，始终位居全国仲裁同行前列。

相对于其他仲裁机构，北仲的发展有其自身的优势和特点

1. 北京市政府比较开明。市政府领导始终认为，政府对仲裁机构的最大支持就是不干预。北仲自成立以来市政府从不干预北仲的仲裁业务及行政事务，这使北仲的发展有一个相对宽松的外部环境。仲裁委员会组成人员多是法律教学、研究领域的专家、学者，如主任江平是全国著名民商法学教授。副主任及委员中有清华、北大、人大的副校长及法学院院长等，保障了仲裁委员会的决策水平和质量。

2. 北仲地处北京，而北京人才济济。北仲的仲裁员队伍聚集了全国各领域优秀的专家、学者共291人。其中香港、台湾地区仲裁员9人，外籍仲裁员10人（英国仲裁员4人，德国仲裁员2人，美国仲

裁员2人，意大利仲裁员1人、法国仲裁员1人）。在仲裁员中，博士占仲裁员总数的20.7%；硕士占仲裁员总数的35.7%；学士占仲裁员总数的36.5%。从仲裁员专业分布看，从事教学研究工作的，占总数的27%；从事经济贸易工作的，占仲总数的31%；从事律师工作的，占总数的19.6%；曾任审判员的，占仲裁员总数的9%；从事其他法律事务工作的，占总数的13.3%。在北仲的涉外仲裁员名单中，有相当一部分是贸仲的仲裁员。为了满足涉外案件当事人的需要，北仲将继续选聘有仲裁实践经验包括韩国仲裁员在内的外籍仲裁员。

3. 北仲的机制灵活，工作班子精干、高效。北仲办公室为北仲的日常办事机构。办公室不采用聘用制、岗位责任制和绩效管理考核制度替代国有企事业单位的“大锅饭”、“铁饭碗”制度。秘书人员均是从各大院校法律专业的硕士生、博士中选聘。去年，办公室对外招聘秘书人员，应聘的法律院校的硕士生、博士生达1000多人。办公室现有工作人员26人平均年龄为28.5岁，大学本科及以上学历占92%，其中，博士、硕士占66.7%。

4. 北仲不断学习借鉴国际商事仲裁的通行做法，追求仲裁的公正与高效。北仲的领导及工作人员不做仲裁员。北仲选聘仲裁员，注重仲裁员的道德修养和专业素质，并规定了较高的仲裁员聘用标准。北仲还制定了《仲裁员守则》、《仲裁员聘用管理办法》等一套管理规范，并在实践中严格执行。北仲每三年进行换届，仲裁委员会换届后均对仲裁员进行重新聘任。北仲从成立到现在历经两次换届，共有200多名仲裁员没有继续聘任。去年北仲大幅度修改了仲裁规则、仲裁员守则等规定，在体现当事人意思自治、保证仲裁独立公正方面中采取了一些新举措：

(1)增加了首席仲裁员的选任方式，双方当事人既可以推荐三名首席人选，也可以从仲裁委员会提供的首席候选人名单中推荐三名首席人选，主任在双方推荐相同的人选中选定首席仲裁员，增大当事人“共同”选择首席仲裁员的概率。

(2)设置了仲裁员披露制度和程序，仲裁员在“决定接受选定或者指定”时，应书面披露自己知悉的“与案件当事人或者代理人存在可能导致当事人对仲裁员独立性、公正性产生怀疑的情形”，披露持续于仲裁全过程。

(3)规定仲裁员不在裁决书签名的，应出具书面意见，该意见不是裁决书的组成部分，但要“附随裁决书送达当事人”，提高裁决的透明度。满足当事人了解不签字仲裁员意见的愿望。

(4)缩短了办案时间。国际商事仲裁程序的审理期限由过去的8个月减少到6个月等，保障仲裁灵活快速进行。

(5)明确规定仲裁员不得担任北仲仲裁案件的代理人。

(6) 规定了《仲裁员报酬支付办法》并将办法送交各仲裁员。

修订的《仲裁规则》、《仲裁员守则》等将于今年3月1日开始实行。

5. 北仲注重办公自动化建设，从成立起就与电脑公司开发了仲裁办案系统管理软件。现在办公室实现局域联网，每个仲裁厅都配有电脑、数字录音、录相系统，北仲立案、结案全过程均通过电脑软件系统进行控制和管理；仲裁庭的开庭、仲裁庭会议均实行电脑当庭录入。仲裁庭当庭调解成功的，可根据当事人调解协议立即制作出调解书。北仲还设有供当事人了解仲裁员培训情况、专业资历、办案数量等情况的电脑查询系统。下一步，北仲要逐步实现网上办公，当事人可通过密码上网查询仲裁员背景资料、仲裁员可上网查询案件审理进展情况，电脑可自动提示仲裁员办案期限，以便最大限度缩短办案时间，提高仲裁效率。

6. 北仲有良好的公共关系。北仲与北京法院系统，与全国其他仲裁机构，与律师界、学术界一直保持良好业务交流的关系。自从北仲提出要提高自己国际化、现代化水平后，注意加强与各国仲裁机构间的交流与合作。韩国是中国的近邻，我们在文化上，在独立、自尊、自强的进取精神上，有许多相似的地方和共同语言。我希望在座各位朋友有机会北京能够访问北仲。在这里，我代表北仲向各位发出真诚的邀请。我们相信中国、韩国仲裁界、商界的交流与合作必将推动我们两国仲裁事业的共同发展。

最后，再次真诚地感谢韩国仲裁学会、韩国商事仲裁院；感谢三星物产公社、议员，感谢在座的各位朋友！